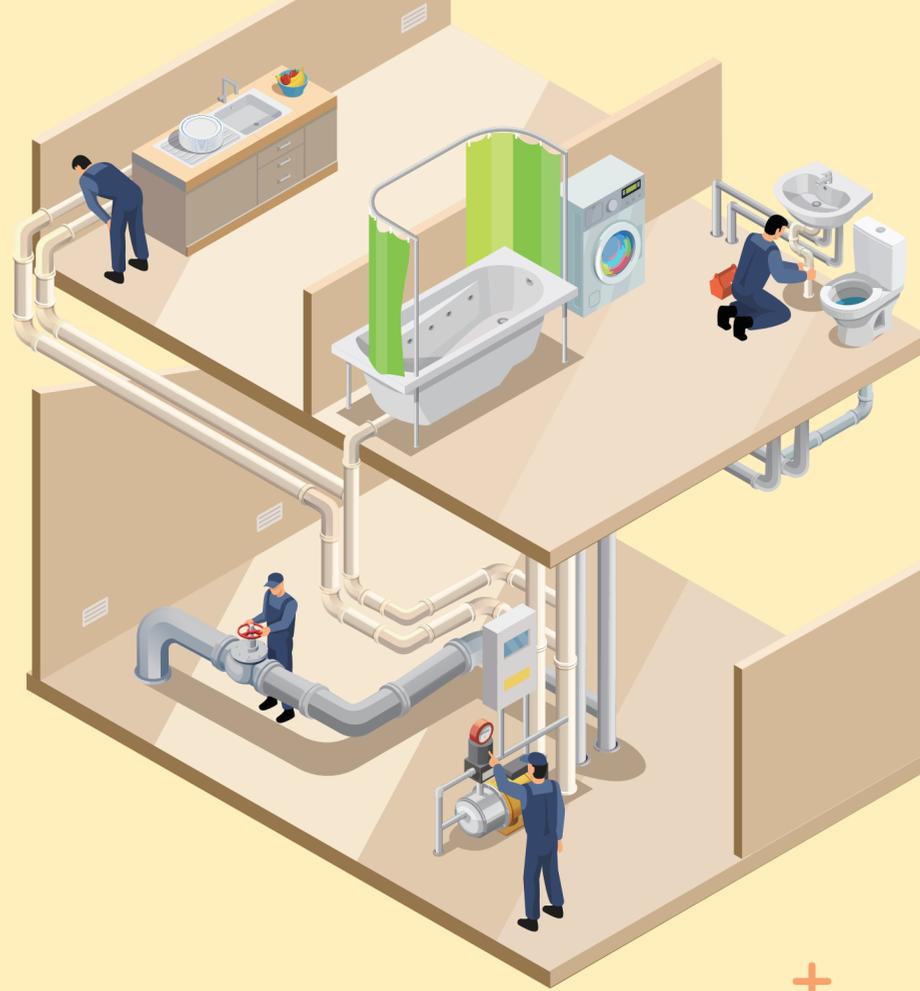


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실시!!



교체공사비를 지원해드립니다.

국가에서 「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」을 통해 부식성이 강한 노후 옥내급수관(아연도강관 등) 교체 시 소요되는 공사비를 지원해드립니다.

공사비 지원대상

- ▶ 기준 중위소득 45~100%에 해당하면서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
 - ※ 단, 주택의 거주세대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주택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지원 가능

지원대상	기준
1순위	기준 중위소득 45~60% 중 아연도강관 재질 옥내급수관 사용주택 거주세대
2순위	기준 중위소득 45~60% 중 2000년 이전 준공 주택 거주세대
3순위	기준 중위소득 60~100% 중 2000년 이전 준공 주택 거주세대

※ 각 순위에서 옥내급수관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 지원 가능

- 1) 주택 :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
- 2) 개선 :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 제거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관을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를 의미함

공사비 지원금액

지원대상	실제 공사비 기준 지원금액	최대지원금액
세대급수관	실제 공사비의 95%	세대당 최대 2백만원
공용급수관		세대당 최대 1백만원

※ 세대당 공사비의 95%와 최대 지원금액 중 낮은 금액 지원

- 1) 공용급수관 :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배관
- 2) 세대급수관 : 세대 내부 수도계량기 이후의 배관

공사비 지원절차

- ▶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, 견적서, 위임장, 건축물관리대장, 사업자등록증 및 건물주 통장사본 등
- ▶ 공사시행 및 공사 지원금 신청
 - 신청인은 지자체 승인 후 30일 이내 공사를 착공하여야 함
 - 시공업체는 공사일지를 작성하고 공사 완료 후 신청인은 지자체에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함
 -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: 신청인→지자체(첨부서류: 세금계산서, 간이영수증,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)

유의사항 및 상담문의

- ▶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
- ▶ 문의처 : 관할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소 및 한국상하수도협회
 - 공사비 지원 대상여부 문의 : 관할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수도사업소
 - ※ 전화번호 안내: 환경부 물사랑누리집(<https://ilovewater.or.kr>) → 지자체 대표전화에서 확인 가능
 - 공사 지원 관련 기술적인 사항 문의 : 한국상하수도협회(02-3156-7854)

공사비 지원절차



※ 공사비 지원 승인 없이 공사한 경우
공사비 지원 불가

